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 5. 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3. 8. 화우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은 사실상의 전면개정이라 불릴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관련 업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5. 18.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 배경

지난 3. 14. 공포되고, 올해 9. 15.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난 화우 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 3. 8.)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동의 일변도의 처리 요건 개편, 국외이전 규정 개편 등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공개되지 않는 점, 이 같은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실무의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고지 방법(법 제2조 제7의2, 제25조의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법 제20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법 제35조의2),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법 제64조의2) 등을 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기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 실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8.에 이르러 우선적으로 2023. 9. 15.에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23. 5. 19.부터 2023. 6. 28.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에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개정 내용 구체화,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기준 일원화(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개한 2023. 5. 1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분류	구 분	주요 내용
정보주체 권리 강화	동의를 받는 방법(영 제17조 제1항) 추가적인 이용-제공(영 제14조의2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행사를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하게 함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예상 가능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의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 고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관련 산업 촉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영 제27조의2, 제2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 구조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상 피촬영자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영 제2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 영상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CCTV 설치·운영 가능토록 함
	수집 출처 이용-제공내역 통지(영 제15조의2, 제1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
	특정 기술 채택 의무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산', '보안서버' 등 용어 삭제로 기술중립적 용어 정비
해외 관련규정 반영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영 제29조의7 ~ 제29조의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 등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받은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국내대리인의 지정(영 제3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반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
공공기관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정성 확보 조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특례(영 제30조의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접근권한 부여·접속기록·정보주체 통지·전담부서 배치·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조치를 구체화함
유출 시 벌칙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영 제39조,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범위 내로 변 경함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함(증명책임 전환)

분류	구분	주요 내용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영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결과 공표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3조,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3. 15.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사항의 경우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관련 업무 중 사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규정 통합, 과징금 액수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의 증명 책임 전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 도입 등 상당한 규제 실무의 변화를 도입하였기에, 다수의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그러한 규제 변화의 대상과 정도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고지 의무의 이행을 인정하는 등 규제 당국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엿보이는데, 차후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유지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구체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023. 9. 15. 이후 시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관련 규제 당국의 태도와 법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

배종우

T. (+82) 2 6182 8745

변호사

E. jwbai@yoonyang.com

백재환

T. (+82) 2 6182 8366

전문위원

E. jhb@yoonyang.com

지재원

T. (+82) 2 6003 7568

연구위원

E. jwi@yoonyang.com